

연금상담전문가(CPE) 교재 2권 개정표(교재 발행일: 2023.03.01)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	38	상2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60 대 부부가구의 적정생활비는 300 만 원 수준이다. 이는 조사 가구의 평균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중고령자 노후실태에 따르면, 60 대 부부가구의 적정생활비는 315 만 원(2023 년말 화폐가치)이다. 이 금액은 60 대 은퇴가구의 평균 수치로서 실제 생활비는 개별 가구의 은퇴 전 소득이나 소비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문장 수정
2	39	상2	82.6%를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나머지 17.4%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고 있다(2022 년 말 기준).	81.5%를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나머지 18.5%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고 있다(2023 년 9 월 기준).	업데이트
2	40	하5	주가가 51%	1 년 기준으로 주가가 51%	추가
2	46	하6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하였더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디폴트 옵션제도는 IRP 계좌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후 두번째 이후에 납입되는 부당금은 대기기간없이 디폴트옵션 상품에 자동투자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하였더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IRP 계좌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
2	46	하4	IRP 계좌 가입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IRP 계좌 가입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7~9 개의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추가
2	50	표5-2	주식비중 40% 이하 채권혼합형펀드	채권혼합형펀드	규정 개정
2	50	하12	채권혼합형펀드 중 주식투자 한도가 총자산의 40%	채권혼합형펀드는 주식투자 한도가 총자산의 50%	규정 개정
2	50	하9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펀드의 대부분 은 주식투자 한도가 40%인 펀드들이다.	삭제	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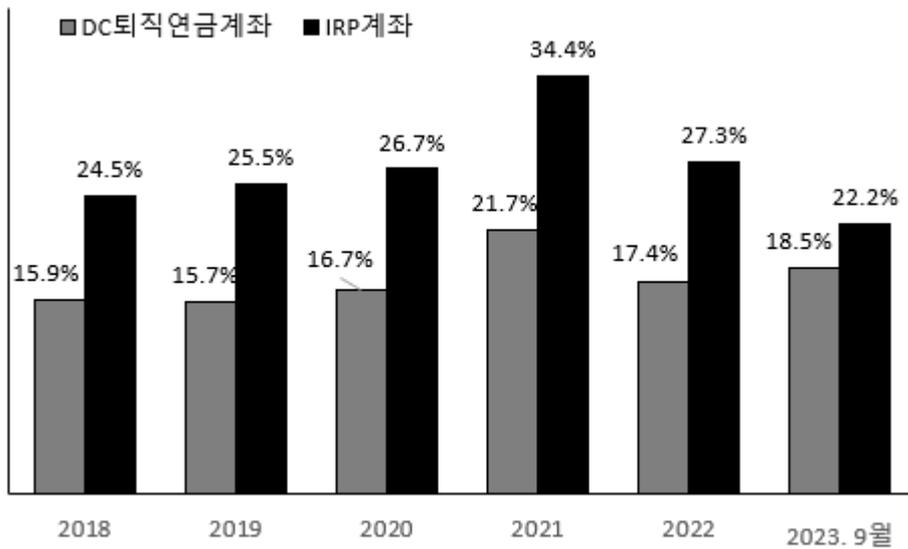
2	52	상5	퇴직연금계좌에서는 펀드규약상 주식최대비중이 40% 이하인 채권혼합형펀드만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40%를 초과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는 적립금의 70% 이내에서 (합산 기준)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펀드 및 채권혼합형펀드는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는 적립금의 70% 까지서 (합산 기준) 투자할 수 있다.	문장 수정
2	52	하5	하지만 일부 국채를 제외하고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개별 채권보다는 채권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편리하다.	퇴직연금계좌에서도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지만,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채권형펀드나 채권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 수정
2	53	상6	투자한도는 퇴직연금계좌 적립금의 30% 로 제한된다. 동일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증권 의 투자한도는 40% 이다.	투자한도는 DC 형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적립금의 10%(가입자의 모든 IRP 계좌 합산 기준 30%)로 제한된다. 동일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DC 형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적립금의 15%(가입자의 모든 IRP 계좌 합산 기준 40%) 이다.	규정 개정
2	55	상4	(2021 년 말 기준)	(2023 년 9 월말 기준)	업데이트
2	55	상7	2021 년 말 기준 DC 형 퇴직연금가입자와 IRP 계좌 가입자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각각 21.7%와 34.4% 로서	2023 년 9 월 말 현재 DC 형 퇴직연금가입자와 IRP 계좌 가입자의 실적배당상품 비중은 각각 18.5%와 22.2% 로서	업데이트
2	55	그림 5-3		첨부 1 로 대체	업데이트
2	59	하10	1,000 좌당 가격으로	대부분 1,000좌당 가격으로	문장수정
2	60	상1	오늘 아침에 고시되는 기준가격은 이를 전 증가를 사용하여 계산되므로 어제 주가 변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감 시간 직전에 가입하면 당일 증가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다.	문장 수정
2	85	하1		새 문단으로 첨부 2 추가	문단 추가
2	91	표5-13		첨부3으로 대체	업데이트
2	94	표 5-14		첨부 4로 대체	표 대체
2	107	표 5-17	주요 TDF 의 합성총보수비용	주요 TDF의 합성총보수비용(온라인클래스 기준)	문장 추가
2	115	그림		첨부5로 대체	업데이트

		5-14			
2	115	하6	최근 10년 동안 연 평균 3%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물가가 연 1.5% 상승하였으므로 실질임금 증가율은 연 1.5% 내외였다.	최근 10년(2013~2022) 동안 연 평균 3.4%씩 증가하였다. 동 기간 물가가 연 1.6% 상승하였으므로 실질임금 증가율은 연 1.8% 내외였다.	업데이트
2	122	상2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가입한 경우 연령별 노후 생활비 부족액은 <그림 5-15>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 후 현재물가 기준 월 600만 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 65세부터 월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연령별 노후 생활비 부족액은 <그림 5-15>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추가
2	137	상6	2021년 IRP계좌를 보유한 55세 이상 고령자 수는 76만명	2022년 IRP계좌를 보유한 55세 이상 고령자 수는 80만명	업데이트
2	137	상7	25.3조원에 달한다. 5년 만에 각각 5.1배와 3.3배	30조 4천억 원에 달한다. 5년 만에 각각 2.9배와 4.1배	업데이트
2	137	상8	각각 3.7배와 2.6배	각각 1.4배와 3.9배	업데이트
2	137	상9	11.3배, 적립금은 3.9배	2.7배, 적립금은 4.2배	업데이트
2	137	그림 5-17		첨부 6으로 대체	업데이트
2	148	하6	미국은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하여 IRA계좌에서는 72세 이후 (2020년 1월 1일 전에 70.5세 이상인 경우 70.5세), 401(k) 등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는 72세(72세 이후 은퇴하는 경우 은퇴 연령)부터 전년도 연금계좌 적립금을 기준으로 최저인출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여야 한다. 미국의 최저인출률은 호주와 달리 가입자의 평균기대여명별로 명시되어 있다. 최저인출률 미만으로 인출하는 가입자는 최저인출률 해당 금액에서 실제 인출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5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Roth IRA를 제외한 퇴직 연금계좌에서는 73세부터 최저인출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여야 한다. Roth IRA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최저인출률은 호주와 달리 가입자의 평균기대여명별로 명시되어 있다. 최저인출률 미만으로 인출하는 가입자는 최저인출률 해당 금액에서 실제 인출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5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
2	149	하4, 6	1,200만원	1,500만 원	수정
2	160	상5	참고로 2022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68만 1,724원이므로, 이 금액의 9%인 24만 1,355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납부액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2,989,237원이므로, 이 금액의 9%인 26만9천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보험료라 볼 수 있다.	업데이트

2	160	상1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18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사람의 연금수령액은 24만 230원임에 비해 9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사람의 연금수령액은 37만 3,000원으로 50% 이상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4년 현재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18만원씩 10년간 납부한 사람의 연금수령액은 252,580원임에 비해, 9만원씩 20년간 납부한 사람의 연금수령액은 401,410원으로 59% 정도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업데이트
2	162	사례	A씨는 월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에 해당되어 2023년 현재 월 49만 7,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중 절반을 회사가 지원하므로 매월 23만 5,800원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답: 49만 7,700원 전액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A씨는 월소득이 500만원이어서 월 45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 중 절반을 회사가 지원하므로 매월 22만5천원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답: 45만원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
2	163	하7	A값(2022년 기준 268만 1,000원)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수정
2	163	2번째 [사례]	추납총액 = 2,681,000원 × 9% × 50개월 = 1,206만 4,500원(추납기간 이자액 별도)	2024년 A값은 2,989.237원이므로 추납총액 = 2,989.237원 × 9% × 50개월 = 1,345만 1,560원(추납기간 이자액 별도)	수정
2	164	[사례]	2022년, 43%	2024년, 42%	업데이트
2	166	하1		[첨부] 국민연금설계실무 사례	내용 추가
2	168	하1		[첨부] 퇴직연금설계실무 사례	내용 추가
2	170	표 6-2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시 3.3~5.5% 선택적 분리과세)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시 3.3~5.5% 선택적 분리과세)	업데이트
2	174	상4	연간 사적연금 총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간 사적연금 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정
2	174	하1	연간 1,2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수정
2	175	상2	연간 1,2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수정
2	175	하1		[첨부] 연금계좌설계실무 사례	내용 추가
2	179	하1		[첨부] 세제비적격개인연금보험 설계실무 사례	내용 추가
2	181	하1		[첨부] 기타연금설계실무 사례	내용 추가
2	197	상3, 5, 6	1,200만 원	1,500만 원	수정

첨부 1

<그림 5-3>



첨부 2

⑤ 채권형 ETF 투자전략은 ETF 이름에 표시

채권형 ETF의 투자전략은 주로 투자할 채권의 만기(듀레이션)와 채권 유형을 대표하는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패시브전략과 해당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전략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ETF는 이름에 만기와 투자할 채권의 종류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OOO국고채3년' ETF는 국고채에 투자하여 평균만기를 3년으로 유지하여 국고채 3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채권형 ETF이다. 이 ETF는 초기에 3년 만기 국고채를 매수하였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잔존만기가 짧아지므로 교체매매를 통하여 평균적으로 잔존만기를 3년으로 유지한다.

액티브전략을 추구하는 ETF에는 '액티브'가 ETF 이름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신용도가 AA- 신용평가등급보다 우수한 채권으로 구성된 종합채권지수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 전략을 추구하는 채권형 ETF이다.

채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만기보유형 채권 ETF가 다수 출시되고 있다. 만기보유형 채권 ETF는 특정 만기의 채권을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후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ETF이다. 예를 들어 'OOO 25-09 회사채(AA-이상)' ETF는 2025년 9월에 만기 도래하는 신용평가등급 AA- 이상 회사채를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형 ETF이다.

만기보유형 채권 ETF는 채권을 직접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과 비슷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개인이 개별 채권을 매수하고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만기보유형 채권 ETF는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매매할 수 있어서 개인이 투자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첨부 3

<표 5-13> MSCI ACWI 의 지역별 국가별 비중(2023. 12. 31.)

구분	비중	지역/국가	비중
선진국 23개국	88.8%	미국	59.3%
		캐나다	3.0%
		유럽	17.0%
		일본	6.1%
		APAC(일본제외)	3.4%
이머징마켓 27개국	11.2%	중국	3.3%
		한국	1.4%
		기타 국가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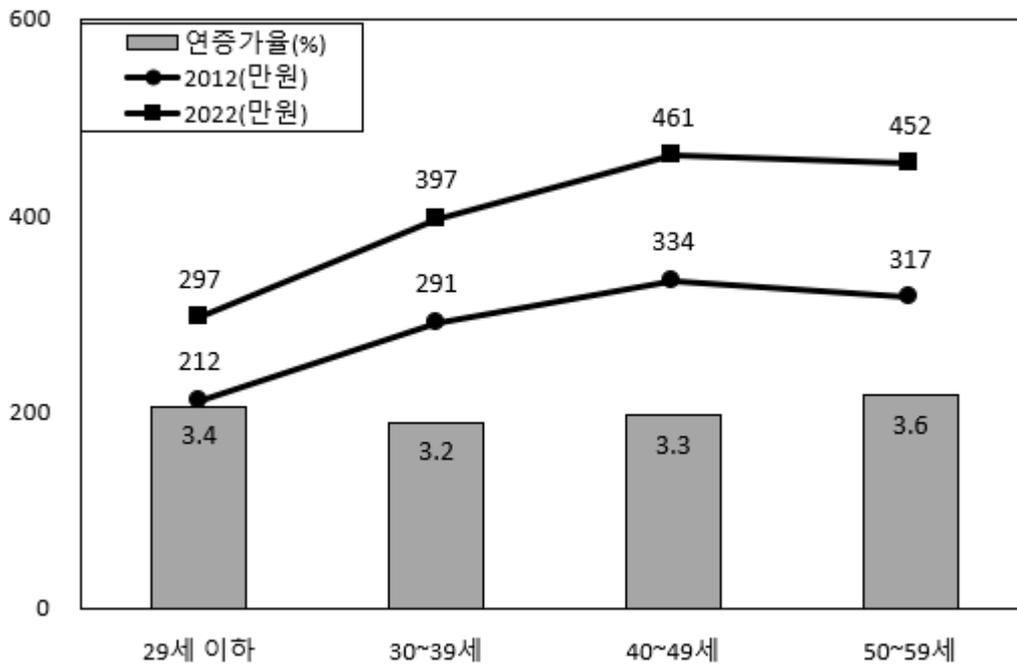
출처: MSCI

첨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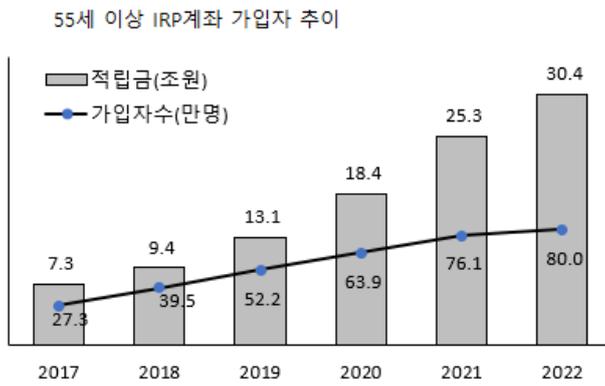
표 5-14 해외의 주요 주식시장지수

국가	지수명	정의
미국	DJIA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 30개 종목의 주가가중지수
	S&P 500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대형주 500개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NASDAQ	나스닥에 상장된 3,000개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유로	EURO STOXX 50	유로지역 증시에 상장된 블루칩 50개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영국	FTSE 100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대형주 100개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일본	NIKKEI 225	도쿄 거래소 1부를 대표하는 225개 종목의 주가가중지수
중국	CSI 300	상해와 심천 거래소에 상장된 대형주 30개0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홍콩	HSCEI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H주, 레드칩, P칩 50개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 H 주식: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본토 국영기업 주식 - 레드칩: 홍콩에 설립된 중국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량기업 주식 - P칩: 홍콩에 설립된 중국 민영기업 주식
인디아	BSE Sensex	뭄바이 증시에 상장된 우량 30개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Nifty 50	뭄바이 증시의 대형주 50개 종목의 시가총액가중지수
베트남	VN 30	호치민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 30개 종목의 동일가중지수

첨부 5 그림 5-14



첨부 6 그림 5-17 IRP계좌 현황



연령대별 IRP계좌 현황

구분	연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가입자 (만 명)	2017	16.2	7.1	4.0
	2022	39.7	25.7	14.6
누적증가율		144%	261%	267%
적립금 (조 원)	2017	3.8	2.4	1.2
	2022	14.6	10.8	5.0
누적증가율		390%	447%	424%

국민연금설계실무 사례

◆ 국민연금 임의가입 효율성 상담 사례 -----

사례자> 1970년생 여성, 주부,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 월보험료 9만원 납입 중이며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월 35만원임.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며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월 180만원임.

질문> 유족연금 중복수령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임의가입을 계속 해야 할까요?

답변> 부부가 모두 장수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연금 중복수급 제한 규정에 따라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부인은 남편의 유족연금 108만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 때 부인의 본인연금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부인의 유족연금을 남편이 수령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연령 차이가 크거나, 부부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장수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며, 유족연금 수령 중 재혼하는 경우 본인 연금이 부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국민연금 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임의가입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효율성 상담 사례 -----

사례자> 55세 남성, 근로소득 연8천만원, 60세 퇴직 예정.

국민연금공단 상담내용> 추후납부 가능기간 30개월, 지금 1593만원 추납 시 연금수령액 월 12만원 증가함.

질문> 추후납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1593만원을 추후납부하고 연금액이 월 12만원 상승하는 경우 상계월수는 132개월입니다. 65세 연금 개시 후 11년이 경과하면 납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연금에 비해 유리한 상황입니다. 추후납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추후납부 후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연금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소득의 감소가 없다면 추후납부 시점은 60세 퇴직 직전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여부 상담 사례 -----

사례자> 61세 남성, 근로소득자, 64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120만원 수령 예정

질문> 월3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답변>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소득(근로+사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연간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2024년 현재 A값 = 2,989,237원

사례자의 월평균소득금액 = (3600만-1065만) / 12개월 = 211만원

사례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 수령시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여 노령연금액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최대 5년간만 해당되며, 5년이 경과하면 소득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상담 사례 -----

사례자> 63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150만원 수령예정

질문> 노령연금 수령을 연기해서 연금액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던데요, 연기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령액을 줄이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고,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수령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며,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평생 받을 국민연금수령액을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설계실무 사례

◆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상담 사례 -----

사례자> 58세, 올해 퇴직예정, 퇴직연금 3억원 보유, 퇴직소득세율 4%

질문>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수령 시 일부 자금을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 4%를 납부하면 퇴직연금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여 연금인출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할인된 2.8% 세율이 부과하며, 인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4% 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원금은 연금 또는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원금 인출액은 다른 연금계좌 인출액과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설계실무 사례

◆ 연금계좌 수령액 한도 상담 사례 -----

사례자> 45세,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연간 1800만원 납입 중, 현재 연금계좌 잔액 1억원

질문>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간 1500만원 초과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연금계좌에 계속 납입을 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답변> 연금계좌 연금수령액 중 연금소득세 부과대상 금액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적립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간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수령 기간을 20년 정도로 늘려서 장기로 수령한다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수령액을 관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세제비적격개인연금보험 설계실무 사례

◆ 연금액의 미래 가치 상담 사례 -----

사례자> 30세, 자영업자, 연금보험 월 50만원 납입 중

질문> 가입한 연금보험의 65세 시점 예상연금액은 월100만원입니다. 향후 계속 물가가 상승할텐데, 35년 후에 100만원을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의 문제는 연금 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보유한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화폐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2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 만큼 투자 금액도 늘려야 합니다. 정액 투자보다 정률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내 급여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늘어난 만큼 저축투자의 비중도 같은 비율로 늘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년간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산의 가치가 유지 또는 증가되었던 이유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투자금액을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 연금 보험 상담 사례 -----

사례자> 50세 여성, 주부, 2015년 가입한 A생명 연금보험 월30만원 납입 중, 2020년 가입한 B생명 연금보험 월 20만원 납입 중.

질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인당 월납입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4월 이후에 계약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2015년에 가입한 월적립식 연금보험은 비과세 한도에 합산되지 않으며, 2020년에 가입한 20만원은 비과세 한도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월납입금액 한도는 월 130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합계액 1억원 비과세 한도를 월적립식으로 환산하여 납입총액 1억원 내에서 비과세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 상품의 특징에 따라 종신형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개인별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연금설계실무 사례

◆ 주택연금 수령자 과세 관련 상담 사례 -----

사례자> 65세, 남성, 경기도 시가 5억원 상당 아파트 거주.

질문> 주택연금을 받으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나요? 기초연금 수령시에도 불리한가요?

답변> 주택연금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연금처럼 수령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판단 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부동산 자산으로 평가하여 반영되며, 주택연금 누적수령액은 부채로서 일반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주택연금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상담 사례 -----

질문> 주택연금은 수수료가 높고, 대출이자를 월복리로 분리해서 불리하다고 하던데요?

답변> 주택연금은 가입시 1.5%의 초기보증료와 보증잔액에 대해 매년 0.75%의 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령한 연금액에 대해 월복리의 대출 이자를 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료 및 대출이자는 연금가입 또는 수령 시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후 담보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뿐, 비용과 대출이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	200	상1	2023년 9월 10일 만 65세가 되는 강사랑씨는 단독가구이고 8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 이다. 강사랑씨의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50 만 원을 포함하여 130 만 원이다. 강사랑씨 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 2023 년의 기준연금액은 32 만 3,180 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202 만 원이다.	2024년 9월 10일 만 65세가 되는 강사랑씨(단독가구)는 8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 이다. 강사랑씨의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60 만 원(이 중 국민연금 A 급여액은 30 만 원)을 포함하여 150 만 원이다. 강사랑씨가 수령하는 기초연금액은 얼마인가? 2024 년의 기준연금액은 33 만 4,180 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 만 원이다.	업데이트
2	200	하2	202 만 원보다 적은 130 만 원이므로	213 만 원보다 적은 150 만 원이므로	업데이트
2	201	상2	50 만 원은 기준연금액 32 만 3,180 원의 154.7%로	60 만 원은 기준연금액 33 만 4,810 원의 179.2%로	업데이트
2	201	상8	• 국민연금급여액 적용 산식 = $323,180 \times 250\% - 500,000 = 307,950$ 원	• 국민연금급여액 적용 산식 = $334,810 \times 250\% - 600,000 = 23$ 만 7,025 원	업데이트
2	201	상9	323,180 원의 50%이므로	334,810 원의 50%이므로	업데이트
2	201	상10	= $323,180 - (2/3) \times 270,000 + 323,180 \times 50\% = 30$ 만 4,770 원	= $334,810 - (2/3) \times 300,000 + 334,810 \times 50\% = 30$ 만 2,215 원	업데이트
2	201	상12	30 만 7,950 원이다.	30 만 2,215 원이다.	업데이트
2	201	하5	130 만 원과 기초연금 산정액 30 만 7,950 원을	150 만 원과 기초연금 산정액 30 만 2,215 원을	업데이트
2	201	하4	202 만 원보다	213 만 원보다	업데이트
2	201	하1	30 만 7,950 원의	30만 2,215원의	업데이트
2	202	상2	2023 년	2024 년	업데이트
2	202	상3	2023 년	2024 년	업데이트
2	202	상4	320 만 원일 경우 홍성기씨 부부가 각각 수령하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 2023 년	335 만 원일 경우 홍성기씨 부부가 각각 수령하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 2024 년	업데이트
2	202	상5	선정기준액은 323 만 2,000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32 만 3,180 원으로	선정기준액은 340 만 8,000 원이고 기준연금액은 33 만 4,810 원으로	업데이트
2	202	하6	소득인정액 320 만 원과	소득인정액 335만 원과	업데이트

2	202	하6	합한 금액 36 만원의 합계는 356 만원으로	합한 금액 36 만원의 합계는 371 만원으로	업데이트
2	202	하5	선정기준액 323 만 2,000 원을	선정기준액 340 만 8,000 원을	업데이트
2	202	하3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3,232,000 - 3,200,000) = 3 만 2,000 원이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3,408,000-3,350,000 = 5만 8,000원이	업데이트
2	202	하2	6 만 4,636 원 보다 작으므로 홍성기씨 부부는 최저급여액인 6 만 4,636 원을 수령 한다	6만 6,962원 보다 작으므로 홍성기씨 부부는 최저급여액인 6만 6,962원을 수령한다.	업데이트
2	203	상4	$64,636 \times 150,000 \div (150,000 + 300,000) = 21,545$ 원	$66,962 \times 150,000 \div (150,000 + 300,000) = 22,321$ 원	업데이트
2	203	상5	$64,636 \times 300,000 \div (150,000 + 300,000) = 43,091$ 원	$66,962 \times 300,000 \div (150,000 + 300,000) = 44,641$ 원	업데이트
2	203	상7	강창기씨는 만 65 세로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60 만 원(A 급여액 20 만 원)이고	강창기(65세)씨는 국민연금 급여액은 65만 원(A급여액 40만 원)이고	업데이트
2	203	상8	285 만 원일 때	310만 원일 때	업데이트
2	203	상9	기준연금액은 32만 3,18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323만 2,000원이라고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340만 8,000원이라고	업데이트
2	203	상12	285만 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23만 2,000원을	310만 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40만 8,000원을	업데이트
2	203	하5	60만 원으로 기준연금액의 186%에 달하여	65만 원으로 기준연금액의 194.1%에 달하여	업데이트
2	204	상1	$323,180 \times 250\% - 600,000 = 207,950$ 원	$334,810 \times 250\% - 650,000 = 187,025$ 원	업데이트
2	204	상2	$\text{Max}[0, (323,180 - (2/3) \times 200,000)] + 323,180 \times 50\% = 351,436 \Rightarrow 323,180$ 원	$\text{Max}[0, (334,810 - (2/3) \times 400,000)] + 334,810 \times 50\% = 235,548$ 원	업데이트
2	204	상4	A급여액 적용 산식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므로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으로 재조 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A급여액 적용 산식으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으로 산정한 기초연금액보다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감액 후 기초연금액은 23만 5,548원이다.	업데이트
2	204	상7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이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이	업데이트
2	204	상10	강창기씨 부부의 기초연금 산정액이 각각 32만 3,180원이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된다.	강창기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므로 부부감액이 적용된다.	업데이트
2	204	상10	부부감액은 개인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의 20%이므로 부부감액 후	• 강창기씨의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235,548 x (1-	업데이트

			기초연금액은 강창기씨와 배우자 모두 258,544(= 323,180 × 80%)이다.	0.2)=188,438원 • 배우자의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334,810 × (1-0.2)=267,848원	
2	204	상13	• 부부감액 후 강창기씨 부부의 기초연금 산정액은 258,544 + 258,544 = 517,088원	• 부부감액 후 강창기씨 부부의 기초연금 산정액: 188,438 + 267,848 = 456,286원	업데이트
2	204	하6	285만 원과 기초연금 산정액 51만 7,088원을	310만 원과 기초연금 산정액 45만 6,286원을	업데이트
2	204	하5	336만 7,088원으로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23만 2,000원을	355만 6,286원으로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40만 8,000원을	업데이트
2	204	하1	소득역전방지감액 = (2,850,000 + 517,088) - 3,232,000 = 135,088원	소득역전방지감액 = (3,100,000 + 456,286) - 3,408,000 = 148,286원	업데이트
2	205	상3	517,088 - 135,088 = 30만 2,000원 강창기씨 부부는 감액 적용 후 기초연금액이 38만 2,000원으로 최저연금액 64,636원을 상회하므로 38만 2,00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강창기씨와 배우자의 부부감액 후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동일하므로 개인별로 19만 1,000원씩 수령한다.	456,286 - 148,286 = 30만 8,000원 강창기씨 부부는 감액 적용 후 기초연금액이 30만 8,000원으로 최저연금액 6만 6,962원 (기준연금액의 20%)을 상회하므로 30만 8,00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개인별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 강창기씨 기초연금 수령액 = 308,000 × 235,548 ÷ (235,548+334,810) = 127,199원 • 배우자 기초연금 수령액 = 308,000 × 334,810 ÷ (235,548+334,810) = 180,801원	내용수정
2	205	하4	202만 원	213만 원	업데이트
2	205	하3	32만 2,180원	33만 4,810원	업데이트
2	206	상8	= 121만 6,667원	= 121만 6,666원	업데이트
2	206	상10	180	213	업데이트
2	206	하6	202만 원을	213만 원을	업데이트
2	206	하5	32만 3,180원	33만 4,810원	업데이트
2	206	하1	무료임차소득은 거주하는	김혜자씨가 거주할 아들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9억 원이므로 무료임차소득은 거주 하는	추가
2	207	하1	202만 원을	213만 원을	업데이트
2	207	표	A값 400	A값 4,000,000	문장 수정

			B값 500 n 120	B값 5,000,000 n 120개월	
2	207	상1	기본연금액: = 1.456 × (400 + 500)(1 + 0.05 × 120 ÷ 12) = 1,965만 6,000원	기본연금액 = 1.456 × (4,000,000 + 5,000,000)(1 + 0.05 × 120 ÷ 12) = 1,965만 6,000원	문장 수정
2	207	하6	평가하여 시가표준액에서 차감한다.	평가하여 시가표준액에서 차감한다. 부동산(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김혜자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이 공제된다. 김혜자씨는 아들의 집이 위치한 왕(중소도시)에서 거주할 예정이므로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다.	추가
2	208	상1	2000년 1월	2000년 2월	수정
2	208	상4	기준소득월액평균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수정
2	209	표	400 500 120	4,000,000원 5,000,000원 120개월	수정
2	209	표 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금액 = 1.456 × (400 + 500)(1 + 0.05 × 120 ÷ 12) = 1,965만 6,000원 <p>기본연금액은 연간 수령액이므로 박민국씨가 매월 수령하는 기본연금액은 163만 8,000원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박민국씨는 매월 163만 8,00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금액 = 1.456 × (4,000,000 + 5,000,000)(1 + 0.05 × 120 ÷ 12) = 1,965만 6,000원 <p>위에서 계산한 기본연금액은 연수령액이므로 박민국씨가 매월 수령하는 기본연금액은 163만 8,000원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박민국씨는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25일에 163만 8,00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한다.</p>	수정
2	210	하5	김국진씨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60세가 되는 2021년 5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입기간 23년). 김국진씨가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시점(2024년 6월)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A값)이 300만 원,	김국진씨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2021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입기간 23년). 김국진씨가 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시점(2024년 6월)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이 299만 원	문장 수정
2	211	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금액(연수령액) = 1.732 × (300+350) × (1+0.05 × 36 ÷ 12)=1,294만 6,700원 기본연금액 월수령액 = 1,294.6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연금액(연수령액) = 1.732 × (2,990,000+3,500,000) × (1+0.05 × 36 ÷ 12) = 1,292만 6,782원 기본연금액 월수령액 = 12,926,782 ÷ 	문장 수정

			12 = 107만 8,891원	12 = 107만 7,231원	
2	211	하6	<p>평균소득 = A값과 B값의 평균 = (300 + 350) ÷ 2 = 325만 원</p> <p>1.44333% × 325 × 23 = 107만 8,891원</p>	<p>평균소득 = A값과 B값의 평균 = (2,990,000+3,500,000) ÷ 2 = 325만 5,000원</p> <p>1.44333% × 3,245,000 × 23 = 107만 7,231원</p>	
2	211	하2	<p>B값 기준 연금지급률=기본연금 월수령액 ÷ (평균소득 × 가입연수) = 107.8891 ÷ (350 × 23) = 1.34%</p>	<p>B값 기준 연금지급률 = 기본연금 월수령액 ÷ (평균소득 × 가입연수) = 1,077,231 ÷ (350 × 23) = 1.34%</p>	
2	212	상8	아버지가 사망한 후 받고 있는 유족연금	유족연금	문장 수정
2	212	상9	해당하는 연금액이다.	해당하는 연금액이다.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았다.	추가
2	212	하2	어머니의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연금소득금액이	추가
2	213	상9	2023년에 퇴직할	2024년에 퇴직할	업데이트
2	213	하2	<p>김광진씨는 아래의 공적연금연계 신청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직적연금연계 신청을 하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p>	<p>김광진씨는 아래의 공적연금연계 신청요건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직적연금연계 신청을 하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p>	문장 수정
2	215	하5	2023년 매월 ~예정이다. 286만 1,091원이다.	2024년 매월 ~예정이다. 298만 9,237원이다.	업데이트
2	215	하4	66~70세 2,861,091원	65~69세 2,989,237원	업데이트
2	216	하3	3,937,500 - 2,861,091 = 107만 6,409원	3,937,500 - 2,989,237 = 94만 8,263원	업데이트
2	216	하2	= 5만 원 + (1,076,409 - 1,000,000) × 10% = 5만 7,640원	= 948,263 × 5% = 47,413원	업데이트
2	216	하1	따라서 박상일씨는 매월 5만 7,640원을 차감한 94만 2,36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한다.	• 감액 후 수령액=1,000,000-47,413=952,587원	업데이트
2	217	상7	250만 원이다.	264만 원이다.	업데이트

2	218	하6	7,980,000 - 2,500,000 = 548만 원	7,980,000 - 2,640,000 = 534만 원	업데이트
2	218	하5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48만 원이므로	264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34만 원이므로	업데이트
2	218	하3	=90 + (548-200) × 70% = 333.6만 원	=900,000 + (5,340,000-2,000,000) × 70% = 323만 8,000 원	업데이트
2	222	하1	216 + 49.25 + 45.14=310.39만 원	2,160,000 + 492,480 + 451,400 = 310만 3,880원	내용수정
2	225	하1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동시에 있는 IRP계좌에서 인출할 때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수 있다. IRP계좌의 퇴직소득이 1억원이고 올해 인출하는 금액이 2,250만 원이므로 전액 퇴직소득에서 인출된다.	퇴직소득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이 예치되어 있는 IRP계좌에서 인출할 때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수 있다. IRP계좌의 퇴직 소득이 1억 원이고 올해 인출하는 금액이 2,571만 4,285원이므로 전액 퇴직소득에서 인출된다. 참고로, 퇴직급여법상 IRP계좌의 연금수령 기간은 5년 이상이지만,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금으로 인출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내용수정
2	226	하4	이승기씨는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계좌와 개인부담금이 납입된 IRP계좌 중 어떤 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가?	이승기씨는 2024년 1월 2일에 두 IRP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가?	내용수정
2	226	하2	퇴직급여와 개인부담금 모두 동일한 IRP계좌에 입금된 경우 퇴직급여를 모두 인출한 후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수 있다. 이승기씨는 퇴직급여와 개인부담금을 다른 IRP계좌에 납입하였고 두 계좌 모두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퇴직소득이 이체된 IRP계좌는 개인부담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55세가 되는 일자와 퇴직급여가 이체된 일자 중 늦은 일자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부담금만 이체된 IRP계좌는 계좌개설 후 5년(2013년 3월 전에 개설된 계좌는 10년)이 경과한 일자와 55세가 된 일자 중 늦은 일자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내용수정
2	227	상3	참고로 퇴직소득이 이체된 IRP계좌는 만 55세가 되는 날짜와 퇴직급여가 이체된 날짜 중 늦은 날짜이고 개인부담금이 이체된 IRP계좌는 계좌개설 후 5년(2013년 3월 전에 개	가람은행 IRP계좌에는 2023년 11월 1일에 퇴직소득이 이체되었고 이승기씨는 2023년 11월 1일 55세가 되므로 2023년 11월 1일에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였다. 한강증권	내용수정

			설된 계좌는 10년)이 경과하고 만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IRP계좌는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27일 10년이 경과하였지만, 2023년 11월 1일 이승기씨가 55세가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1일에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두 계좌 모두 2024년 1월 2일에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2	227	상6	이승기씨는 2022년 12월 7일 IRP계좌가 개설된 한강증권을 방문하여 개인부담금이 납입된 IRP계좌에서 연금수령 신청을 하였다. 연금수령 신청일 현재 IRP계좌의 적립금은	이승기씨는 2024년 1월 2일 한강증권 IRP계좌에서 연금수령 신청을 하였다. 신청일 현재 IRP계좌 적립금은	문장 수정
2	227	하8	IRP계좌가 2013년 3월 전에 개설되었으므로 IRP계좌를 개설한 후 10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한 2022년 12월 시점 의 연금수령연차는 6년 차가 된다.	한강증권 IRP계좌는 2023년 11월 1일에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24년 1월 2일의 연금수령연차는 7년차이다(2013년 3월 1일 이전 계좌 개설).	문장 수정
2	227	하5	$60,000,000 \div (11 - 6) \times 1.2 = 1,440$ 만 원	$60,000,000 \div (11 - 7) \times 1.2 = 1,800$ 만 원	업데이트
2	227	하4	총연금액 1,440만 원을 수령할 때	1,800만을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문장수정
2	227	하1	1,440만 원의 5.5%인 79만 2,000원이다,	1,800만 원의 5.5%인 99만 원이다.	문장 수정
2	228	상1	Q3) 경우 이승기씨가 2023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하는 종합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얼마인가?	이승기씨가 2024년에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Q3)에서 인출한 금액과 같고 이승기씨 부부 모두 타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5월에 납부할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은 얼마인가?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한다.	문장 수정
2	228	상3	총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수령액 1,800만 원은 1,500만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문장 수정
2	228	표		첨부 1로 대체	표 대체
2	228	하7	이승기씨는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 79만 2,000원 중 55만 7,040원을 환급	• 16.5% 분리과세 선택 시 세금=18,000,000 × 16.5%=297만	문장 수정

			받을 수 있다.	원(지방소득세 포함) 이승기씨는 2025년 5월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세금은 44만 8,80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서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금 99만 원 중 54만 1,2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	229	하12	2022년 말	2023년 말	업데이트
2	231	상1	11.25%로서 인출 기준에 미달한다.	11.25%이므로 인출 기준인 12.5%에 미달한다.	문장 수정
2	231	하9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할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문장 수정
2	231	하1	세금 납부가 종료된다.	과세가 종료된다.	문장 수정
2	232	상3	2022년에	2023년에	업데이트
2	233	상10	2022년에	2023년에	업데이트
2	234	하7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따라서, 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위한 퇴직급여 적립금은 담보대출 신청 직전 김승남씨의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문장 추가
2	235	상3	박일남(55세)씨는	박일남(53세)씨는	문장 수정
2	235	상7	전액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A은행에서 과세제외금액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녀의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박일남씨가 과세제외 금액을 인출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전액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고 한다.	문장 수정
2	235	하11	[답] 이하 전체	Q1 박일남씨가 두 연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가? A1 ④ IRP계좌에서는 인출 불가능 IRP계좌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55세 이후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일부해지가 불가능하고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박일남씨 나이가 53세이고 자녀의	내용 추가

				<p>대학등록금은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RP계좌에서는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없다.</p> <p>②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는 인출 가능</p> <p>연금저축펀드계좌는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p>	
2	235	하11	[답] 이하 전체	<p>Q2 위에서 인출이 가능한 경우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시오.</p> <p>A2 박일남씨는 B증권의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A은행에서 발급 받은 연금납입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B증권에 제출한다. B증권은 박일남씨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중 작은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가.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합산액=연금계좌의 납입액 합계-세액공제 받은 금액</p> $=(700+600) \times 5 - 700 \times 5 = 3,000 \text{ 만원}$ <p>나. 자사에 개설된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납입액=600 × 5=3,000만 원</p> <p>A증권에 납입한 3,000만 원 전액이 과세제외금액과 같으므로 박일남씨는 이 중 1,000만 원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B증권에서 인출할 수 있다.</p>	내용 추가
2	236	하9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장 수정
2	240	상1	산정 예시	산정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 예	문장 추가

				시는 저당권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예상 가입비용이다. 신탁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가입비용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7만 5천 원(2024년 기준)이다.	
2	241	A1 상2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이다.	12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다(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포함).	업데이트
2	241	A1 하2	9억 원	12억 원	업데이트
2	246	상4	2023년 4월	2024년 4월	업데이트
2	246	상5	2013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매월 9만 원(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2022년 12월까지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다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매월 9만 원(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다. 김상만씨는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없다.	문장 수정
2	246	하3	2022년 1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2023년 1월에	2023년 1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2024년 1월에	업데이트
2	247	상1 표		첨부 2으로 대체	표 대체
2	247	상6	A1 전체	첨부 3으로 대체	전체 수정
2	248	하8	2023년 1월	2024년 1월	업데이트
2	248	하7	2023년 1월	2024년 1월	업데이트
2	248	하6	323.2만 원으로	340만 8천 원,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으로	업데이트
2	248	하5	김혜정씨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김상만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68만 300원으로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323.2만 원 이하므로	김혜정씨는 전업주부로서 김상만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2023년까지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김혜정씨가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혜정씨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김상만씨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68만 6,84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340만 8천 원 이하므로	문장 추가
2	249	상2	박연금(65세)씨는 서울에 시가 7억 원(시가표준액 5억 원)인	박연금(65세)씨 부부는 서울에 시가 8억 원(시가표준액 5억 원)인	문장 수정

2	249	상3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월 2만 4,4460원 포함)	문장 수정
2	249	상9	박연금씨는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도하여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주택을 중소도시에서 임차하여 생활할 예정이다.	첫 대안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도하여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중소도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것이다.	문장 수정
2	249	상11	3억 5,000만 원은	4억 5,000만 원은	문장 수정
2	249	상11	지금부터 평생 매월 정액으로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 시가 1억 원 당 25만 5,000원을 수령 할 수 있다.	두번째 대안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주택 시가 1억 원 당 매월 19만 2,000원(2024. 1월 기준)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문장 수정
2	249	상13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기준연금액은 32만 3,180원이고 부부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23.2만 원으로 가정한다.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이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40만 8,000 원이다.	업데이트
2	249	하3	= 350,000,000 × 3% = 1,050만 원/연	= 450,000,000 × 3% = 1,350만 원/연	
2	250	상1	= 450,000 + (10,500,000 - 40,000 × 12) ÷ 12 = 128만 5,000원/월	= 450,000 + (13,500,000 - 40,000 × 12) ÷ 12 = 153만 5,000원/월	
2	250	상2	박연금씨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은 없다.	• 박연금씨 배우자의 소득평가액=0	문장 수정
2	250	하6	박연금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금융재산인 정기예금 3억 5,000만 원과 보통예금 5,000만 원이 있다. 박연금씨가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중소도시에 거주할 예정이므로 일반재산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 원이다.	박연금씨가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중소도시에 거주할 예정이므로 일반재산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 원이므로	문장 삭제
2	251	상2	= 1,285,000 + 1,983,333 = 326만 8,333원/월	= 1,535,000 + 2,316,666 = 385만 1,666원/월	업데이트
2	251	상4	약 327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23.2만	385만 1,666 원으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40만 8,000	업데이트
2	251	상6	83만 5,000원을 합한 128만 5,000원이다	112만 5,000원을 합한 157만 5,000원이다	업데이트
2	251	하7	시가 7억 원	시가 8억 원	업데이트
2	251	하7	소득환산액은 183만 3,333원이다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문장 수정
2	251	하4	박연금씨가 현 아파트에서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따라서	문장 수정

				5억 원에서 박연금씨가 현 아파트에서	
2	252	상6	박연금씨의 기초연금 산정액은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과 같다. 박연금씨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45만 원으로서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의 15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감액은 없다. 박연금씨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산정액은 박연금씨와 같은 32만 3,180원이다.	박연금씨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은 42만 5,540원으로서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의 15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감액은 없고 박연금씨의 기초연금 산정액은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과 같다. 박연금씨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산정액은 박연금씨와 같은 33만 4,810원이다.	업데이트
2	252	상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감액 후 박연금씨의 기초연금 산정액 = $323,180 \times (1 - 0.2) = 25만 8,544원$ 부부감액 후 박연금씨 배우자의 기초연금 산정액 = $323,180 \times (1 - 0.2) = 25만 8,544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감액 후 박연금씨의 기초연금 산정액 = $334,810 \times (1 - 0.2) = 26만 7,848원$ 부부감액 후 박연금씨 배우자의 기초연금 산정액 = $334,810 \times (1 - 0.2) = 26만 7,848원$ 	업데이트
2	252	하9	51만 7,088원과	53만 5,696원과	업데이트
2	252	하8	288만 3,333원을 합한 금액은 280만 421원이다.	166만 6,666원을 합한 금액은 281만 8,021원이다.	업데이트
2	252	하7	323.2만 원보다	340만 8,000원보다	업데이트
2	252	하6	25만 8,540원씩 합계 51만 7,080원을	26만 7,344원씩 합계 53만 5,696원을	업데이트
2	252	하4	박연금 씨가 소유한 주택(시가 7억 원)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종신형으로 신청할 경우 매월 178만 5,000원	박연금씨가 소유한 주택(시가 8억 원)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종신형으로 신청할 경우 매월 192만 원	업데이트
2	252	하2	25만 5,000원에 7을 곱하여 산출하였다(2023년	24만 원에 8을 곱하여 산출하였다(2024년	업데이트
2	253	상3	51만 7,080원 그리고 주택연금 178만 5,000원을 합하여 275만 2,080원이다.	53만 5,696원 그리고 주택연금 192만 원을 합하여 290만 5,696원이다.	업데이트
2	253	상5	박연금씨가 현재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기초연금액 51만 7,08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여 지급된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매월 153만 6,000원씩 정액 지급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증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문장 수정
2	253	상10	전세보증금도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도 받을 수 있다(전세보증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문장 수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하여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수령함)	
2	253	하3	주택(시가 7억 원)	주택(시가 10억 원)	문장 수정
2	254	상1	2023년	2024년	업데이트
2	254	상6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다르다.	과세대상 소득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문장 수정
2	254	상7	과세대상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직역연금)	문장 수정
2	254	하6	과세대상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국민연금)	문장 수정
2	254	하5	김이삼씨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액은 본인의	김이삼씨가 수령하는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액은 연금수령액에 본인의	문장 수정
2	256	하9	신고 시	신고 시 추가로	문장 수정
2	260	상2	2022년 1월 2일 만55세가 된 강일남씨는 2022년 1월 5일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203년 1월 2일 55세가 된 강일남씨는 2023년 1월 5일 연금수령을 신청한 후	업데이트
2	260	상7	2022년에 인출한	2023년에 인출한	업데이트
2	260	하7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 10년이 경과하고 강일남씨가 만 55세가 되는2022년 6년차로 한다.	연금수령 요건은 계좌 개설 후 10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되는 2023년 1월 2일에 충족되었다. 따라서 2023년의 연금수령연차는 6년차가 된다.	문장 수정
2	261	상4	2023년에	2024년에	업데이트
2	261	상5	2023년 연금인출 한도를 산정할 때 연금평가액은 2023년	2024년 연금인출 한도를 산정할 때 연금평가액은 2024년	업데이트
2	261	상6	2023년 연금으로	2024년 연금으로	업데이트
2	262	상2	박해봉(60세)씨는 2023년 1월에	박해봉씨는 60세가 되는 2024년 1월 2일에	문장 수정
2	262	상4	28만 3,380원과 별도로 매월 150만 원의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을	월 2만 4,460원과 별도로 매월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문장 수정
2	262	상5	한다고 가정한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장 수정
2	262	상8	2023년 1월	2024년 1월	업데이트
2	262	표1	△△증권 IRP*	△△증권 IRP	*삭제
2	262	표3	2022년 5월 10일	2023년 5월 10일	업데이트
2	262	표3	2017년 4월 27일	2013년 4월 27일	업데이트
2	262	표 밑	* 연금저축계좌를 IRP계좌로 이전하여 통합하였음	삭제	각주 삭제

2	263	상6	IRP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IRP계좌에 이체된 이후 언제든지	55세 이후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계좌에서는 언제든지	문장 수정
2	263	상7	2023년	2024년	업데이트
2	263	하8	박해봉씨가 현재 60세이고 IRP계좌가 개설된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권 IRP계좌에서도 언제든지 연금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2013년 4월 27일에 개설된 △△증권 IRP계좌는 2018년 4월 27일에 5년이 경과하였고 박해봉씨는 5년 전인 2019년 1월 2일에 55세가 되었으므로 2019년 1월 2일에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박해봉씨는 △△증권 IRP계좌에서도 언제든지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문장 수정
2	263	하5	2023년	2024년	업데이트
2권	264	상5	따라서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이다.	연금개시 가능일이 속하는 2022년이 1년차이므로 연금수령연차는 2년차이다.	내용수정
2권	264	표	△△증권 IRP의 연금수령연차: 1 첫 해 인출한도: 1,560만원 합계; 4,200만 원	△△증권 IRP의 연금수령연차: 2 첫 해 인출한도: 1,733만 3,333원 합계: 4,373만 3,333원	내용수정
2	264	상3	2017년 4월에 계좌가 개설되었으므로 연금개시 신청시점인 2023년 1월 30일 현재 계좌 개설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연금개시 가능일이 속하는 2022년이 1년차이므로 연금수령연차는 2년차이다.	2019년 1월 2일에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19년이 연금수령 1년차이고 2024년은 6년차가 된다.	문장 수정
2	264	표 상3	연금수령연차: 2 첫 해 인출 한도: 1,733만 3,333원	연금수령연차: 6 첫 해 인출 한도: 3,900만 원	업데이트
2	264	표 상4	첫 해 인출 한도 4,373만 3,333원	첫 해 인출 한도 6,540만 원	업데이트
2	264	상11	연 4,373만 3,333원	6,540만 원	업데이트
2	264	상15	1,733만 3,333원을	6,540만 원을	업데이트

첨부 1

구분	금액	비고
연금소득(총연금액)	18,000,000	
연금소득공제	6,700,000	6,300,000+4,000,000 x 10%
연금소득금액	11,300,000	
인적공제	3,000,000	2명(본인 및 배우자)
과세표준	8,300,000	
한계세율	6%	
산출세액	498,000	8,300,000 x 6%
표준세액공제	7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	홈택스에서 신고시 공제
결정세액(종합소득세)	408,000	
지방소득세	40,800	
총납부세액	448,800	
기납부세액	990,000	
환급세액	541,200	

첨부 2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 값	204	211	218	227	236	244	254	268	286	299
재평가율	1.462	1.420	1.373	1.317	1.268	1.226	1.177	1.115	1.045	1.000
적용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례상수	1.695	1.680	1.665	1.650	1.635	1.620	1.605	1.590	1.575	1.560

첨부 3

A1

1. 기본연금액=비례상수 × (A+B)

• 비례상수=국민연금 가입기간(2014~2023년) 평균 = 1.6275

- 비례상수는 소득대체율에 상응하는 상수로서 위 표에서 보듯이 매년 0.015씩 하락하고 있어서 가입기간의 비례상수 평균을 사용함

• A값=299만 원

-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서 2024년에 연금수급을 개시하는 사람의 A값은 2023년 말에 산정된 A값임

• B값=124만 원

- B값은 김혜정씨의 가입기간의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개시 연령 직전연도

(2023년) 말에 가치로 환산된 금액의 평균임

- 2023년 말의 가치로 환산된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과 재평가율

곱하여 산정. 재평가율은 A값의 증가율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준소득월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재평가율	1.462	1.420	1.373	1.317	1.268	1.226	1.177	1.115	1.045	1.000
'23 년말 가치	146.2	142.0	137.3	131.7	126.8	122.6	117.7	111.5	104.5	100.0

• 김혜정씨의 기본연금액(연수령액) = $1.6275 \times (299+124) = 688\text{만 } 4,325\text{원}$

2. 김혜정씨가 2024년에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액(연수령액) = 기본연금액 \times (가입연수 \div 20) = $6,884,325 \times (10\div 20)$

= 3,442,162원

• 노령연금액(월수령액) = $3,442,162 \div 12 = 28\text{만 } 6,840\text{원}(10\text{원 미만 절사})$